

제82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17. 8. 14.(서면심의)

□ 안건명 :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제82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공사중 환경영향 저감시설(세륜세차시설, 폐수처리시설, 이동식 화장실, 가설방진망, 침사지, 가설방음벽, 건설폐기물처리등)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
-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반영여부를 확인할 것
- 교통량 조사 및 교통시설조사에 다음 조사내용을 포함할 것
 - 교통량 조사는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고 오전·오후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나누어 조사할 것
 - 보행량 조사를 추가하되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
 - 각 구간별로 교통시설 및 노상적차물 조사를 실시하여 차로폭원 및 유효보도 폭원을 조사할 것
 - 조사대상 지역을 블록별로 구분하여 주차 실태를 조사할 것
- 환경영향 검토에 “도심 역사고궁 방문객을 위한 하절기 도시 열섬화 저감을 위한 포장공법 제시 및 전·후 효과 예측 분석”을 추가할 것
-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, 제거, 감소 되도록 “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(DFS, Design For Safety)” 내용을 추가할 것


첨부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창덕궁 앞 도심하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시공	<p>○주민설명회 주변 주택 및 건물등과의 조화 및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관계 주민으로 구성된 설계참여단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하여 최종설계를 진행한다.</p> <p>○품질관리 공사예산 내역서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공종별 품질시험비(예시 슬럼프시험 00회외 시험항목별 시험횟수와 시험단가)와 품질관리비(예시 품질관리자 인건비, 교육훈련비, 품질검사비, 품질시험 차량비등)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.</p> <p>○공사중 환경관리 공사중 환경영향 저감시설(세륜세차시설, 폐수처리시설, 이동식 화장실, 가설방진망, 침사지, 가설방음벽, 건설폐기물처리등)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.</p> <p>○성과품 작성 및 납품 (1)시방서, 보고서 및 설계 도면간 상이한 부분이 없도록하며 수량산출서와 설계내역서가 일치토록 한다. (2)[계약예규]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및 3조에 명시된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,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)와 계약문서(계약서, 설계서, 유의서, 공사계약일반조건, 공사계약특수조건, 산출내역서)를 분명히 작성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한다.</p>	
종합의견	위 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합니다.	

2017년 8월 2일

심의위원 : 이 성 원 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구조	<p>1.“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, <u>용역인</u>을 계약상대자라 한다.“에서 용역인을 <u>수급인</u>으로 수정.(P.4)</p> <p>2. “(2)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지 작성하여 제출한 <u>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</u>”에서 참여건설기술자를 <u>참여기술자</u>로 수정(P.7)</p> <p>3. “(15) 발주기관은 <u>건설사업관리</u>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”에서 건설사업관리를 <u>건설사업관리(설계단계)</u>를 추가하여 명시하기 바람.(P.16)</p> <p>4. 제4장 기본설계 1.일반사항에서 (9), (11)이 동일내용이므로 (11)항 삭제 (P.24)</p> <p>5. 제6장 성과품납품 2. 1) 설계심의용 자료납품에서 기본설계VE 보고서를 추가하고 비고란에 “필요시(100억이상일 경우)”를 추가할 것.(P.44)</p> <p>6. 과업내용서 과업규모에 “낙원상가 하부 공간 개선(천정 : 약 5,960㎡, 기둥 : 총 57개소, 보도 : 약 2,490㎡)”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계약상대자가 인지할 수있도록 보완하기 바람. (P.4)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7년 8월 4 일

심의위원 : 김 태 흥 (서명 )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) 전체적인 CONCEPT이 도시재생 가로활성화 라면 “걷기 좋은 곳”, “걸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곳”, “걷는 것이 중심이 되는곳”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범위나 방향을 우선순위에 부합하게 정리 할 것. :즉 도보나 건물앞 전면공지에 주차를 불허하고 편안하고,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</p> <p>2) 가로변 파사드 디자인 가이드 라인 제시도 가능하면 가로변 상가의 기존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, 기존상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.</p> <p>3) 쌈지마당, 전통마당외에 가로변 기존 공개공지, 전면공지 등도 계획범위에 포함하여 과거로부터의 연속성, 가로의 장소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.</p> <p>4) 부서별로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가로 시설물, 보도, 도로 경계, 가로등, 토목 등 해당 용역범위는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관리 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것.</p> <p>5)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와 체크리스트 를 작성하여 반영여부를 확인할 것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7년 8월 1 일

심의위원 : 이 상곤



(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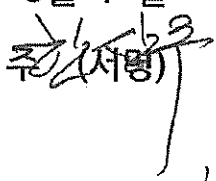
본 검토서는 2017.8.4.(금) 18:00까지 e-mail(hee3408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11page 中 14. 하도급 사항 (1)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.</p> <p>2. 16page 中 23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(6)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진행할 공정에 따라 정산하고 계약 변경할수 있다.</p> <p>3. 22page 3.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내용 추가 6)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정비. 전 후 보행 이용객의 예측 전망 분석치 제시</p> <p>4. 22~23page 4. 환경영향 검토 내용 추가 3) 도심 역사고궁 방문객을 위한 하절기 도시 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포장 공법 제시 및 전·후 효과 예측 분석</p>	
종합의견	<p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17년 8월 1 일


심의위원 : 한 상  (서명)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교통	<p>1. 교통량 조사 및 교통시설조사에 다음 조사내용 포함 요망</p> <p>(1) 교통량조사는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고 오전, 오후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나누어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(2) 보행량조사를 추가하되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(3) 각 구간별로 교통시설 및 노상적치물 조사를 실시하여 차로폭원 및 유효보도폭원을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(4) 조사대상지역을 블록별로 구분하여 주차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7년 8월 일

심의위원 : 노종기 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창덕궁 앞 도심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안전관리	<p>1. 구조물 조사(P.20)</p> <p>(1)항의 내용에서 “과업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 구조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,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한다.” 라는 항목에서 현존구조물중 특히, 낙원상가의 경우에는 기존의 점검, 진단등의 자료등을 수집, 분석하여 기 발생되어 있는 손상들을 확인하거나, 기존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금회 과업에서 손상을 조사하여 손상들에 대한 보수 후 하부공간 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조사에 따른 용역비용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명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 <p>2. 의견청취 (P. 21)</p> <p>(1)항에서 “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시기(횃수)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설계사에서 과업수행 수립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 <p>3. 교통처리계획 수립(P. 31)</p> <p>(1) 장기간 공사로 인해 교통을 통제하여야 할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별도의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하는데, 이를 위한 자료작성의 필요성과 추가 용역비용의 증가분에 대해 검토하여 명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	
종합의견	<p>상기 의견에 대해서 검토 바라며 이를 고려하여 조건부 채택의견을 제시합니다.</p>	

2017년 8월 4 일

심의위원 : 정 운 수  (서명)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**안건명 :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(제82차)**

분 야	검 토 의 건	비 고
공통	<p>○ 5.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에 아래 법령 조항을 수정할 것(6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법 시행규칙 제23조(별지 25호) → 동법 시행규칙 제27조(별지 제27호) <p>○ 11. 신기술의 도입에 아래 내용으로 추가할 것(10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. - 신기술 등 특정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목록표 작성과 해당 도면에 공법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. - 공법 선정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. <p>○ 21. 발주기관의 제공자료에 아래 내용을 삭제할 것(13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2)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<p>○ 22. 작용규정 및 설계기준에 법령명을 정정하고 중복 항목은 삭제할 것(13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(4) 지진재해대책법”은 “(4)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”으로 수정하고 “(20) 지진재해대책법”은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 - 2) 공통분야에서 (16)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, 시공 및 유지 관리 기준” 및 (17)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” 항목이 4) 토목분야 (15) 및 (24) 항목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 <p>○ 제2장 조사업무에서 “토취장, 골재원, 사토장 조사”내용을 추가할 것(17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. 조사항목에 “토취장, 골재원, 사토장 조사” 추가 	

	<p>- 2. 조사내용에 “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국토교통부 「토석정보공유시스템」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수 있는 토취장,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” 추가</p> <p>○ 관련법령을 최신화 할것(18p)</p> <p>-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→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</p> <p>○ 부서명을 현재화 할것(19p)</p> <p>- 지리정보담당관 → 공간정보담당관</p>	
<p>토목</p>	<p>○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아래 내용을 보완할 것(16p)</p> <p>-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(DFS, Design For Safety)</p> <p>(1)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, 제거, 감소되도록 한다.</p> <p>(2)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.</p> <p>(3)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.</p> <p>(4)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.</p> <p>(5)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</p> <p>(6)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·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,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.</p> <p>(7)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,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(8) 해체 및 개·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(9)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,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(10)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.</p> <p>○ “제2장 조사업무 2)측량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(18p)</p> <p>- 기준점, 수준, 지형현황측량은 공간정보담당관의 수치지형도 및 인접공사 (울곡로 등) 조사자료 등을 활용할 것</p>	

전기

○ 22.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중 2)공통분야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(13p)

-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
-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

○ 3) 수전지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(29p)

- 수전시설은 한국전력측과 협의 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되 정전시에 대비하여 2계통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토록 한다.
→ 수전지점은 부하의 중심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수전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공사측과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.

○ 4) 가로등 설계기준에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(29p)

-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(KS C 8010 도로조명기구)에 따르고,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눈부심 제한, 빛공해 방지, 조명기구 효율, 배광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.
- 조명기구의 설치는 노면의 휘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치하고,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.
- 분전함에는 분기회로별로 인체감전 보호형 누전차단기(30mA 0.03초)를 계획하고, 기준치 이하의 전압강하와 누전차단기의 오동작이 없도록 설계한다.

○ 5)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 항목을 삭제할 것(30p)

-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.
→ “삭 제”

○ 7) 급배기시설 항목을 삭제할 것(30p)

- 비상발전기, 펌프 가동시에 대비하여 급배기시설을 설치토록 한다.
→ “삭 제”

○ ⑥ 전기시설 도면 항목 중 “다”항을 삭제할 것(39p)

- 다. 변전실, 전기실, 자동제어 평면도, 장비계통도, 전기실 기기 배치 및 전등 전열설비 계획, 전등계획, 소화기 설치계획, 라디오재방송설비, 가로등 상세,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.
→ “삭 제”

	<p>○ ⑦ 기계시설 도면 항목을 삭제할 것(39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하차도의 장비 일람표, 소화기함 설치평면 및 상세도, 배수배관 평면 및 단면도, 펌프 및 파이프 슬리브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. → “삭 제” 	
조경	<p>○ (3) 기타 설계자문 시에는 서울시 ‘공공조경가’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(p9)</p> <p>○ 식재기반설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(p3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 설계시에는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한다. <p>○ 7)시설물 설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(p29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경시설 설치시에는 계절별 이용량을 고려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. <p>○ 6) 가로수 식재 설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(p28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는 수목보호덮개나 관목 및 지피류 등허부식재를 하여 수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. <p>○ 2) 수목식재에 벽면녹화 내용을 추가할 것(p2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 시에는 식재공간을 확보 및 차폐 식재를 검토한다. <p>○ 수목의 급·관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토록 과업내용에 반영할 것</p> <p>○ 1) 기본방향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(p2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죄방지, 활동성 강화 등 CPTED 적용이 가능한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계를 한다. 	
종합의견	조건부 채택	

2017년 6월 일

심의위원 : 김홍길 (서명)